

제408회 정례회  
'23. 4. 20.(목)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증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김정일 의원 등 7명

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3년 4월 10일
- 회부일자 : 2023년 4월 11일

## 3. 제안사유

-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출자·출연기관을 추가하고,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을 총구매액의 100분의 2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도모하고자 함

## 4. 주요내용

- 우선구매 대상기관 확대를 위해 출자·출연기관을 추가함(안 제4조)
-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2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(안 제5조제3항)
- 도지사는 학교 등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제2항)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제출배경

- 「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」 제5조제3항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사회활동 참여 기여도가 기대보다 낮은 수준임.
- 이에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도 산하 출자·출연기관을 추가하고,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대상기관 확대 및 구매 이행기준을 상향시키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 검토

- **안 제1조**는 자치법규의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타당함.
- **안 제4조**는 “도 산하 출자·출연기관”을 신설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시행을 규정한 조치로 적절하다고 판단됨.
- **안 제5조**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시에 “100분의 2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”을 추가 규정하는 사항으로,

-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」 제10조제3항에 근거하여 개정한 것으로 타당함
- 안 제6조제2항은 상위법령인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 제7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한 것으로 타당함.
- 안 제8조제2항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 등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상호결연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,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
##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도 산하 출자·출연기관을 추가하고, 우선구매 대상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 등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상호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, 법적·내용적으로 문제가 없음.